#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17.) 상정

○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17.) 상정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감사실장 한 기 주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098호, 2006. 12. 28. 공포· 2007. 6. 29. 시행)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.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○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법관·교육자·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.(안 제2조제 1항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함.(안 제2조제2항)
- 위원회는 등록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·결정함.(안 제3조)
-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. (안 제4조)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.(안 제5조)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(안 제6조)
-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,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.(안 제7조)
-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.(안 제8조)
-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규정으로 정함.(안 제9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<del>용</del>	답 변 내 용
○ 조례안 전부개정 사유는?	○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위원회의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.

- 4. 토론요지
  - 가. 찬성토론
  - 없 음
  - 나. 반대토론
  - 없 음
- 5. 심사결과
 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없 음

#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제307호
의 년	결 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098호, 2006. 12. 28. 공포· 2007. 6. 29. 시행)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법관·교육자·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. (안 제2조제1항)
- 나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함.(안 제2조제2항)
- 다. 위원회는 등록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

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 · 결정함.(안 제3조)

- 라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음.(안 제4조)
- 마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. (안 제5조)
- 바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(안 제6조)
- 사.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,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.(안 제7조)
- 아.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.(안 제8조)
- 자.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.(안 제9조)

□ 첨 부: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

###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  - 1. 법관·교육자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
  - 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
  - 3. 부천시 소속 공무원 1명
 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.
  - 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
  - 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
- 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・결정한다.
  - 1.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
  - 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  - 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.
- 1.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- 2.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
  - 2.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
  - 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  - 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
  -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 - 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
- 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-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-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- 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간사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수당 등)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(현행 조례)

####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1993. 09. 10 조례 제1241호

개정 2005. 11. 11 조례 제2119호

개정 2006. 05. 11 조례 제214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- 1. 3인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.
  - 2. 2인의 위원은 부천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-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
  - 1.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  - 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  -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.
  - 1.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  - 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
  - 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
  - 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
  -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
  - 1.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
  - 2. 부천시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- 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부천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  -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  -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05.11.11>
  - 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
  - 2.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
  - 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
- 4.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
-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'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- 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-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간사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 (1993.09.10 조례 제12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5.11.11 조례 제211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6.05.11 조례 제214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